

●법무부공고 제2023-167호

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5월 04일

법무부장관

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검찰이 마약·조직범죄, 금융·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,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검찰청 반부패·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·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소속 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, 반부패부, 마약·조직범죄부,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,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함에 따라, 서울고등검찰청(고등검찰청 검사 7명)과 대전·수원고등검찰청(고등검찰청 검사 각 1명) 검사 정원을 대검찰청(대검찰청 검사 1명, 기획관·정책관·담당관·대변인 5명,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3명)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
- 나.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(고등검찰청 검사 1명)검사 정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(부장검사 1명)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(참조 : 검찰과장, 전화 02) 2110-4210, 팩스 02)3480-308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j.go.kr> 입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

-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(중앙동) 법무부 검찰과(우편번호 13809)
- 전자우편 : smn1234@korea.kr
- 전화번호 : 02) 2110-4210 / 팩스 : 02) 3480-3089